

1.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

- ◇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(2.21~3.4일 만기) 청년이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.25일부터 2.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 운영
- ◇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
 -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
 - 위험 없이 최대 856만원 수익(5년간)으로 자산형성 효과 제고
 - 원하는 금액(월 70만원 한도)을 자유롭게 납입(중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)할 수 있으며,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중
- ◇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·개선방안을 마련·추진해 나갈 예정
 -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하고, 혼인·출산으로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공하는 등 비과세 요건 개선 추진

1.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노력

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.25일부터 2.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(영업일만 운영).

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. 우선,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(이하 '만기수령금')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,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*한 청년(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이 2,400만원 이하)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,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**연 8.19~9.47%**의 일반적금(과세,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)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(최대 856만원)**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* 일시납입금 1,260만원, 월 설정금액 70만원(일시납입금 전환기간 18개월, 신규납입(42개월) 매월 70만원, 금리 6%(기본금리 4.5%, 저소득 우대금리 0.5%, 은행 우대금리 0~1.0%),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

**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3,600만원 이하 : 연 7.47 ~ 8.75%

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4,800만원 이하 : 연 7.40 ~ 8.68%

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6,000만원 이하 : 연 7.32 ~ 8.60%

또한,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,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.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**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(일시대출, 마이너스통장)을 운영중**이며,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.

* <https://portal.kfb.or.kr>, 금리/수수료 비교공시-예금상품금리비교-청년도약계좌금리

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**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**한다.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**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(중도해지이율 적용)받고, 혼인·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***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(기본금리+ 우대금리(조건 충족시) 적용)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**이다.

* 현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①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②가입자의 퇴직, ③사업장의 폐업, ④천재지변,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

** '24년중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추진 예정

아울러,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**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***할 수 있도록 '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 다른 청년정책(주거정책 등)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.

* 가점 부여 기준 등은 관계기관 등 협의중,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

2.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

*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



① 연계가입 신청 : 1.25일 ~ 2.16일 (영업일만 운영)

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* 앱(App)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.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,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.

* 국민·신한·우리·농협·하나·기업·부산·광주·경남·전북·대구은행

(가) 1.25일~2.2일중 신청자 → 2.22일 ~ 3.15일중 계좌개설 가능

(나) 2.5일~2.16일중 신청자 → (1인 가구) 2.26일 ~ 3.15일중
(2인이상 가구) 3.4일 ~ 3.15일중 계좌개설 가능

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,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(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,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)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

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.

② 일시납입 정보 제출,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: 2.5일 ~ 2.29일

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.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, 일시납입금액,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.

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(알림톡에서 안내 예정)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(<https://ylaccount.kinfa.or.kr>)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하다.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. 이 경우, 기본납입 방식(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)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.

- (가) 1.25일~2.2일중 신청자 → 2.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
- (나) 2.5일~2.16일중 신청자 → 2.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

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,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.

※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

- ◇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~34세* 이하 청년
 - * 계좌개설일 기준,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
 - (개인소득) 직전 과세기간*(23.1~23.12월)의 총급여가 7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800만원) 이하
 - * '24.1~2월중 연계가입 신청시, 전전년도 과세기간('22.1~'22.12월)의 소득이 기준
 - ** 단, 총급여 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)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
 - (가구소득)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
 - * '24.1~2월중 연계가입 신청시, 전전년도('22년)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
- ◇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

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.

- (가) 1.25일~2.2일중 신청자 → 2.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
- (나) 2.5일~2.16일중 신청자 → (1인 가구) 2.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
(2인 이상 가구) 2.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

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: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

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하여야 한다. 단,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: 2.22일 ~ 3.15일 (영업일만 운영)

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*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.

*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,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

(가) 1.25일~2.2일중 신청자 → 2.22일 ~ 3.15일중 계좌개설 가능

(나) 2.5일~2.16일중 신청자 → (1인 가구) 2.26일 ~ 3.15일중
(2인이상 가구) 3.4일 ~ 3.15일중 계좌개설 가능

※ 일반 청년(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)의 2월 가입일정 및
전체 청년(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)의 3월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최치연 (02-2100-168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이재 (02-2100-1686) 임재원 (02-2100-1688) |
| <공동> |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| 책임자 | 본부장 | 김진휘 (02-2128-8080) |
| | | 담당자 | 부 장 | 이윤경 (02-2128-8216) |
| |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| 책임자 | 본부장 | 이인균 (02-3705-5184) |
| | | 담당자 | 부장 | 이종혁 (02-3705-5326) |

참고1

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

일시납입금 1,260만원인 경우
**청년도약계좌
 일시납입**
 (청년희망적금 만기자)

(기본금리 연 4.5%¹⁾
 + 저소득 우대금리 연 0.5%²⁾
 + 은행별 우대금리 연 1.0%³⁾

청년도약계좌⁴⁾

(기본금리 연 4.5%
 + 저소득 우대금리 연 0.5%
 + 은행별 우대금리 연 1.0%)

일반적금⁴⁾
 (과세상품)

(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: 3.54%⁵⁾
 시중은행금리 : 3.18%)

납입액 : 4,200만원

*일시납 1,260만원 (70만원 X 18개월)
 + (70만원 X 42개월)

*70만원 X 60개월

*70만원 X 60개월

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 (세전) :

694만원



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(세전) :

162만원



이자소득세 :

0만원 (비과세)

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 (세전) :

641만원



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(세전) :

160만원



이자소득세 :

0만원 (비과세)

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 (세전) :

378만원



이자소득세 :

58만원⁶⁾



수익

+ 856만원

(만기수령액 5,056만원)

수익

+ 801만원

(만기수령액 5,001만원)

수익

+ 320만원

(만기수령액 4,520만원)

1)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·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

*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(3.5%) 가정

2) 연 총급여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(종합소득금액 1,600만원 이하) 적용되는 우대금리 (가입시기별·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)

3)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·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공시중

4) 매월초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, 단리 적용

5) '23.12월 기준 (은행연합회)

6) 이자소득세율은 15.4%인 경우 가정

참고2

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관련 일정
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1/21 | 1/22 | 1/23 | 1/24 | 1/25 | 1/26 | 1/27 |
| | | | | 가입신청 | | |
| 1/28 | 1/29 | 1/30 | 1/31 | 2/1 | 2/2 | 2/3 |
| | 가입신청 | | | | | |
| 2/4 | 2/5 | 2/6 | 2/7 | 2/8 | 2/9 | 2/10 |
| | 가입신청 | | | | | |
| |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| | | | | |
| 2/11 | 2/12 | 2/13 | 2/14 | 2/15 | 2/16 | 2/17 |
| | | 가입신청 | | | | |
| | |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| | | | |
| 2/18 | 2/19 | 2/20 | 2/21 | 2/22 | 2/23 | 2/24 |
| | | | | 계좌개설 (1.25~2.2일 신청자) | | |
| |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| | | | | |
| 2/25 | 2/26 | 2/27 | 2/28 | 2/29 | 3/1 | 3/2 |
| | 계좌개설 (1.25~2.2일 신청자 및 2.5~16 신청자 중 1인가구) | | | | | |
| |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| | | | | |
| 3/3 | 3/4 | 3/5 | 3/6 | 3/7 | 3/8 | 3/9 |
| | 계좌개설 (신청자 전체) | | | | | |
| 3/10 | 3/11 | 3/12 | 3/13 | 3/14 | 3/15 | 3/16 |
| | 계좌개설 (신청자 전체) | | | | | |

참고3**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관련 주요내용**

- (개요)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만기시 수령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
- (일시납입) 일시납입금을 계좌개설 시점에 1회 납입하고,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만큼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
 - (일시납입금)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하며,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필요
 - (월 설정금액) 40만원, 50만원, 60만원, 7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,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월 설정금액 변경은 제한됨
- *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
 - 40만원 : 200만원, 240만원, 280만원, ... , 1,240만원, 1,280만원
 - 50만원 : 200만원, 250만원, 300만원, ... , 1,250만원, 1,300만원
 - 60만원 : 240만원, 300만원, 360만원, ... , 1,200만원, 1,260만원
 - 70만원 : 210만원, 280만원, 350만원, ... , 1,190만원, 1,260만원
- (정부기여금) 일시납입금에 대해 정부기여금 일시에 매칭 지급
 - 월 설정금액,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*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(‘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’에 해당하는 개월수)에 따라 결정
- *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

<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 >

| 개인소득 | | 본인 납입한도(月) | 기여금 지급한도(月) | 기여금 매칭비율 | 기여금 한도(月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총급여 기준 | 종합소득* 기준 | | | | |
| 2,400만원↓ | 1,600만원↓ | 70만원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| 3,600만원↓ | 2,600만원↓ |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
| 4,800만원↓ | 3,600만원↓ |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
| 6,000만원↓ | 4,800만원↓ |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
| 7,500만원↓ | 6,300만원↓ | | - | - | - |

- (신규납입) 일시납입금 전환기간(‘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’에 해당하는 개월수)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납입 허용
 - (신규납입금)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

※ 일시납입 예시

기본 가정

- **개인소득(총급여)이 2,4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**
- **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,200만원 수령**
- **'일시납입금액 1,000만원, 월 설정금액 50만원'으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**

⇒ **일시납입금 전환기간 : 20개월** (1,000만원÷50만원)

→ 가입시점부터 20개월간은 **일시납입금 1,000만원이 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**된다고 간주

→ **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 총 40개월간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**

⇒ 일시납입금에 대한 **정부기여금 일시 매칭지급금 : 46만원**

→ 월 설정금액(50만원) × 가입기준 매칭비율(4.6%) × 일시납입금 전환기간(20개월)